

울 산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8119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종상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주권이 별지 제2 상속분 기재 비율에 따라 각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상속분 비율에 따라 위 주식의 주권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7, 78호증, 갑 제84호증의 1, 2, 갑 제86, 88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망 이상배(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망인의 친형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써 망인의 조카이다. 한편, 망인은 2013. 5. 1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D을 도와 주식회사 F과워(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에너지, 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2012. 5.경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를 체결한 후 F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다. 망인은 2012. 5. 4. 피고 D과 사이에 F의 주식 양도 및 관계사의 책임경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12.에는 위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2차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2. 5. 4.자 및 5. 12.자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주식의 양도>

- 망인은 피고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망인 소유의 F 주식 654,000주(‘이 사건 주식’에 해당한다)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 피고 D은 F이 보유하는,
 - ① 주식회사 FG(2014. 10. 14. 주식회사 G이엔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상호로 지칭하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 7,200주(지분 18%에 해당하는 부분, 시가 3,600만 원 상당),
 - ② 주식회사 F커머스¹⁾(2012. 5. 29. 주식회사 우리종합물산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상호로 지칭하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
 - ③ 중국 현지 법인(ILJIN ENVIRONMENT TECH. Co., Ltd)의 지분 9.9%에 해당하는 주식 (시가 46,955,382원 상당)
 을 각 망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책임 경영>

- 피고 D은 망인에게 그 책임 하에 주식회사 H제이피에스, 주식회사 H케이텍(이하 각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FG 및 중국 법인을 경영하게 하고, 망인은 그 경영에 있어 성실하여야 한다.
- 책임경영의 시행은 본 합의 후 즉시 이행하되, H케이텍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책임경영을 하고 이후의 경영은 재협의한다.
- 망인은 H케이텍 및 FG의 지분에 변동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주요 투자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피고 D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망인과 피고 D은 어떠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영업 및 경영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커머스에 관하여는 2012. 5. 4.자 합의에서는 망인에게 책임경영을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효력상 그에 우선하는 2012. 5. 12자 합의에서는 책임경영 부분에서 F커머스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고, 대신 망인에 대한 F커머스 주식의 양도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상호신뢰 및 기타사항>

- 피고 D은 망인이 운용한 F의 명의신탁계좌 주식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망인은 명의신탁계좌 주식을 가지고 F의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망인은 피고 D이 요구한 일자에 F의 등기이사직, 부회장직 등의 사임과 함께 F에서 퇴사한다.
- 이 사건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합의의 효력은 정지되고 이미 이행 완료된 사항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 2012. 5. 4.자 합의서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2012. 5. 12.자 합의가 우선한다.

라. 한편, F은 2014. 1. 6. 회사를 물적 분할하여, 종전 사업부문 중 화공 및 플랜트 사업 부분을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F플랜트(2014. 1. 7. 주식회사 F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주권의 인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주주

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에 있어 종국적인 해결방법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주권인도청구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주식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망인을 경영일선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누명을 씌워 강압적으로 F에 대한 주식을 빼앗다시피 하고, 결국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중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 H케이텍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 양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피고 D의 합의사항위반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고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항은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H케이텍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 양도의무가 이 사건 합의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59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는 망인이 경영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피고 D의 요구에 응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 등), ②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 D이 망인에게 그 책임하에 H케이텍을 경영하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피고 D이 망인에게 H케이텍의 지배권을 전

면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이 사건 합의에는 망인에 대하여 FG, F커머스 및 중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와 다르게 H케이텍에 관하여는 주식양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④ 결국 이 사건 합의에 H케이텍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위 ②항의 문구만이 있는데 위 '책임 경영'에 관한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요 투자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피고 D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한 이상, 이를 경영권의 양도를 의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합의에 효력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이상욱

 판사 김은영

별지1.

주식의 목록

주식회사 F파워(본점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가 발행한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
식 654,000주

별지2.

상속분 표시

1. 원고 A : 3/7
2. 원고 B : 2/7
3. 원고 C : 2/7. 끝.